

# 예 산 총 칙

2009년도 추경 1 회

제 1 조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368,021,520	11,040,646
일반회계	328,650,118	9,859,504
특별회계	39,371,402	1,181,142
공기업특별회계	34,830,624	1,044,919
상수도공기업	15,852,559	475,577
하수도공기업	18,978,065	569,342
기타특별회계	4,540,778	136,223
주택사업	813,405	24,402
의료급여기금운영	811,797	24,354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195,498	5,865
공영개발사업	405,418	12,163
장기미집행	728,294	21,849
농공지구조성사업	338,596	10,158
기반시설	57,272	1,718
수질개선	922,998	27,690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267,500	8,025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 행위 사업은 "채무부담 행위조서(별첨)"와 같다.

제 4 조 계속비 사업은 별첨 "계속비 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명시이월 사업은 "본예산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586,650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17,2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